

의안번호	제 376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6월 일 (제 281 회)

**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조영재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6 월 2일

##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6월 2일  
 발의자 : 조영재, 연만흠, 강태원  
 김환동, 박재국, 이필용  
 장주식의원(7인)

### 개정이유

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.

-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”로 개정

나. 장학금 중복지급에 관한 단서조항 삭제(안 제3조 제2항)

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

1) 항과 조문사이를 띄어씀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1조)

2) 제1조 목적에 약칭의 사용 금지

3) 및, 또는, 인, 이외 등의 자구를 알기쉬운법령 정비체제에 맞춤.

###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없음(행정국)
- 다. 예산조치 :
- 라. 규제심사 :

##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자녀 및 유자녀”를 “자녀나 유자녀”로, “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새마을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우등생장학금,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년이상”을 “2년 이상”으로, 같은 항 단서 중 “요하지”를 “필요로 하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녀 및 새마을지도자”를 “자녀나 새마을지도자”로 하고, “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”을 “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 성적이”를 “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”로, “정원 의 100의 50이내”를 “정원의 100분의 50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라 한다)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마을회장이 시·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또는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, 시장·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

회 회장에게 추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선정)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선정하고,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2.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3.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4.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

제6조제1항 중 “년간”을 “연간”으로, “5퍼센트로”를 “5퍼센트 이내로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장학생에게”를 “고등학교 장학생에게”로 하고, “대학생은”을 “대학교 장학생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시군지회장”을 “도 새마을회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마을회장”으로, “매학기”를 “매 학기”로, “개시후”를 “개시 후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지금”을 “지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학비 이외의”를 “학비 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군지회장”을 “도 새마을회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마을회장”으로, “규정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도 또는 시군”를 “도나 시·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·시·군”을 “도, 시·군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장군수”를 “시장·군수”로, “확보하되 도 및 시군”을 “학보하되, 도와 시·군”으로, “시군”을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, 제6조제1항과 제2항, 제9조제1항과 제2항, 제11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항과 조문을 띄어쓰기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</u>	<u>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</u>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(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7. 4. 13]</p> <p><b>제2조(장학금의 종류)</b>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/p> <p><b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b>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<u>요하지</u> 아니한다. &lt;개정 2004. 8. 2, 2007. 4. 13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</li> <li>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3.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</li> </ol> <p>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[전문신설 2007. 4. 13]</p> <p><b>제4조(추천)</b>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시·군지회장 또는 시·군 새마을회장(이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(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장학금의 종류)</b>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우등생장학금,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/p> <p><b>제3조(장학생의 자격)</b>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<u>필요로 하지</u>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</li> <li>2.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</li> <li>3.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</li> </ol> <p>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학정한다.</p> <p><b>제4조(추천)</b>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라 한다) 시·군지</p>

하 “시 · 군지회”라 한다)과 시장 · 군수의 공동 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로 한다)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 한다. 다만, 시 · 군지회장은 시 ·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교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8. 2, 2007. 4. 13>

**제5조(선정)** ①도 새마을회장이 시 · 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도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 8. 2, 2007. 4. 13>

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2.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3.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
4.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

## ② 삭제

**제6조(장학생의 정원)** ①장학생은 연간 시 · 군 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로 한다. <개정 2007. 4. 13>

②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.

[전문신설 2007. 4. 13]

**제7조(장학금액)**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4. 13]

**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** ①장학금은 시장 · 군수와 시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

회장이나 시 · 군 새마을회장이 시 ·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또는 문교회장의 신청을 받아, 시장 · 군수와 공동으로 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5조(선정)** ① 도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정 할 때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하여 선정하고, 최종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2.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3. 새마을 사업 중 사망이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
4.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

**제6조(장학생의 정원)** ① 장학생은 연간 시 · 군 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.

② 장학생은 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 다만,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한다.

**제7조(장학금액)**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** 장학금은 시장 · 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 · 군지회장이나 시 · 군 새마을

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급의 정지)**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4. 13>

1.~2. (생 략)

3. 장학생이 퇴학·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4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

②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 (개정 2004. 8. 2)

**제11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**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·시·군의 일반회계 전출금, 국고보조금,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.

**제12조(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)**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도 및 시군은 소요예산액의 50%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·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지급의 정지)**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~2. (현행과 같음)

3. 장학생이 퇴학·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

4.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

② 도 새마을회 시·군지회장이나 시·군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**제11조(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)**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나 시·군에 새마을 장학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, 시·군의 일반회계 전출금, 국고보조금,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.

**제12조(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)**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, 도와 시·군은 소요예산액의 50%씩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매년 시·군별 소요액을 산정 시달하고 도의 예산은 시·군으로 보조해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2조 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

**제23조 (보조금의 교부)** 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시·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.